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51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redacted]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

담당변호사[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7. 18.

판 결 선 고 2019. 8. 27.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24,144,370원의 부과처분 중 458,626,325원(가산세 179,605,625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9,225,630원의 부과처분 중 36,919,220원(가산세 13,003,162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6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구 B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8. 3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8. 24. 위 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 신설한 도로 및 공원 용도의 정비기반시설인 서울 용산구 C 외 45필지 토지 5,126.3㎡(이하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귀속되었고,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인 서울 용산구 D 외 7필지 토지 2,158.1㎡(이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라 한다)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와 교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고, 2016. 11.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65,565,640,15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취득세 4,310,809,690원, 지방교육세 404,854,700원, 농어촌특별세 189,314,22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6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7.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2. 22. "1.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 중 1,458.8㎡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게의 귀속이 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 중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서울 용산구 D 토지 중 698.2㎡, E토지 중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 7,972,02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종전처분에 따라 납입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환급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이 사건 종전처분(원)	경정처분(원)	환급세액(원)
취득세	본세	2,622,625,600	318,880,800	2,303,744,800
	신고불성실가산세	524,525,120	63,776,160	460,748,960
	납부불성실가산세	1,163,658,970	141,487,410	1,022,171,560
	합계	4,310,809,690	524,144,370	3,786,665,320
농어촌특별세	본세	131,131,280	15,944,040	115,187,240
	신고불성실가산세	-	-	-
	납부불성실가산세	58,182,940	7,074,370	51,108,570
	합계	189,314,220	23,018,410	166,295,810
교육세	본세	262,262,560	31,888,080	230,374,480
	신고불성실가산세	26,226,250	3,188,810	23,037,440
	납부불성실가산세	1,416,365,890	14,148,740	102,217,1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6

	합계	404,854,700	49,225,630	355,629,07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무상취득 또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무상취득 또는 원시취득 해당 여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2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3호), 1호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7호 나목)은 1천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6

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6

2) 정당한 세액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과세표준(원)	세율	본세(원)	신고불성실가산세(원)	납부불성실가산세(원)	합계(원)
취득세	7,972,020,000	3.5%	279,020,700	55,804,140	123,801,485	458,626,325
교육세	119,580,300	20%	23,916,060	2,391,606	10,611,556	36,919,22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김주성

판사 차선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6

별지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6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국유재산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끝.